

##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

제정 2021. 12. 30. 조례 제337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안양시 조례 중 「지방자치법」을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본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8호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8호”로 한다.

제4조(「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 중 “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”를 “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8조”로 한다.

제5조(「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”을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8조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”로 한다.

제6조(「안양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

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”로, “및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”을 “및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8조(「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후단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”로 한다.

제9조(「안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지방자치법 제8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”로 한다.

제10조(「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제11조(「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13조(「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4조의2제1항”을 “제7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

“법 제4조의2제4항”을 “법 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요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1항”을 “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(「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(「안양시 통·반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”을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(「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18조(「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19조(「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”로 한다.

제20조(「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21조(「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22조(「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

제6조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(「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24조(「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”를 “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”로 한다.

제25조(「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제156조”로 한다.

제26조(「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27조(「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”를 “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”로 한다.

제28조(「안양시 수도급수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와 제139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와 제15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9조(「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소하

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”로 한다

### 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